

코리아당 대표 류승구  
20200131

### 뉴스티파 4,5,6에 답변서

1

우리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개인이 입법권자입니다. 권력 균형도 모두 성스럽 헌법수호와 법률의 수호임무가 가장 제1의 임무라 할 것입니다.

1

우리 코리아당은 입법 법률의 과도한 상세규정으로 인해 헌법정신이 훼손되는 작은 법률의 개정이 정당의 집단의 이익에 따라 무제한으로 행사되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통과 실현되는 악폐를 중지시키고, 그러한 법률개정을 무효화 시키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

그래서 우리 코리아당의 2006년 전신인 시민당 때부터 악법철폐를 주창하여 왔습니다.  
국회와 정부기구에 악법철폐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하는 법률을 없애는 운동을 게동하고 있습니다.

1

그러나 이런 입장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위원회의 만장일치 통과는 오히려 강화해야하며, 국회의 협의 정신에 위배된 강제 통과를 막기 위한 법률개정이나 법률창조를 어렵게 해야만 합니다.

1

이와는 별도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된 자유로운 입법활동과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징계절차는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어 확실하게 반대합니다.  
국회에 대한 견제는 미워도 결국 국민의 선택의 선거권에 의한 심판을 받게 해야합니다.

1

코리아당은 헌법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중간평가 투표를 통하여 불신임안을 묻는 국민투표 규정을 넣고자 합니다. 물론 부정득표로 그직에서 쫓아내진 못하게 합니다  
만 그들의 양식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여러모로 입법부를 위축시키고 자유로운 정치 활동과 신분보장을 훼손하고, 독재정치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